

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명(단체명)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
설립 근거		
설립 목적		

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·조사 및 관리·보급할 전담 조직, 전문 인력 및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